◉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-66호

「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」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

「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」제정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징계권고 세부기준 및 그 밖의 징 계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참조 : 조사총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. 연락처
 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,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총괄과
- 전자우편 : sooyongjang@korea.kr

3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(전화 (02) 2100 - 3103)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